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오산시 고문변호사 모집방법과 위촉기준, 연임제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 방지,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5항).
- 라. 변호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 소송 수행능력이 부진한 사람 등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항).

- 마.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2조의2제2항).
- 바.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8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 및 해촉)”을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오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2조제3항 중 “하며”를 “하며,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촉 제한 및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2.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
5. 불변기간을 넘겨 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제2조제5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중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의 위임 또는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와 제2조제1항 단서”를 “제6조제2항”으로, “난이도”를 “난이도, 수입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중요소송과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제7항 중 “의회법무담당”을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잔여임기 종료 후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 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 내의 오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하는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 다.</p> <p><신 설></p> <p>② (생 략)</p> <p>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제2조(위촉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 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오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 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p> <p>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 고 개업 중인 변호사</p> <p>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 인</p> <p>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p> <p>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 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 천을 받아 위촉한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③ ----- -- 하며, 자문 및 소송 수행실 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p>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당사자와의 답합
 - 다. 법률자문에 대한 무성의한 회신 및 불성실한 소송수행
 -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신 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삭 제>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규정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신 설>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위촉 제한 및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2.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
 5. 불변기간을 넘겨 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제2조제5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해제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소 사건 등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

에 관한 사항
4.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의 위임 또는 법

- 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 6.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조제2항-----

를자문을 하는 경우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생략)

<신설>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중요소송과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8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
-- 제3조제1항-----

--.

제9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